##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98

발의연월일: 2020. 12. 16.

발 의 자:김경만・위성곤・신정훈

문진석 • 이용선 • 김병주

윤미향 · 김주영 · 이수진

정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출자금 규모와는 무관하게 조합원마다 동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방법 또한 다양하고 편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조합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반면, 임원선출 등 선거권 행사는 여전히 출석해야만 행사할 수 있음.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협동조합의 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임원 선거가 지연됨으로써 협동조합이 운영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55조제7항 신설, 제89조).

#### 법률 제 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사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89조 전단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 ⑤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
	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
	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u>⑥</u> ·⑦ (생 략)	<u>⑦・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55조(이사회) ① ~ ⑥ (생 략)	제55조(이사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⑦ 이사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u>⑦</u> (생 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제89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	제89조(준용 규정)
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	
9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부	
터 <u>제7항</u> 까지, 제20조, 제21조,	<u>제8항</u>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특별조합	

원"을 "특별회원"으로 보고, 제1	
6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5분의 2"로 본다.	